

●법무부고시 제2025-406호

「출입국관리법」 제81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법무부장관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고시

1. 시행기간

2025년 10월 24일 0시부터 2025년 11월 01일 24시까지

2. 시행지역 및 대상시설

가. 시행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전역

나. 대상시설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자
-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한 자

3. 신고대상자 및 신고의무자

가. 신고대상자 : 단기 체류 자격으로 가진 숙박외국인

- B-1(사증면제), B-2(관광·통과),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또는 C-4(단기취업)의 단기 체류 자격을 부여받아 입국한 외국인

나. 신고의무자 : 가.항의 숙박외국인이 투숙한 숙박시설의 숙박업자

4. 신고제외 대상

2025 APEC Korea에 참가한 각 국가 정상 및 정부대표단에 포함된 인원

5. 신고내용

숙박외국인이 제공한 여권, 여행증명서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상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6. 신고시기 및 신고방법

가. 신고시기 : 기존 투숙자는 경보 발령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 경보 발령 이후 투숙자는 숙박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 신고

나. 신고방법 : 외국인 숙박신고 전용 웹사이트(<https://kstay.hikorea.go.kr>) 또는 모바일 전용 앱을 통한 전자신고

※ 통신망 장애 발생 등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팩스, 문자, 방문 등 절차를 통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